

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3186-1
----------	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12월 1일

제안자 : 정혜영 의원

1. 수정이유

- ‘이사회 상정안 등’ 삭제 조항을 유지하되, 시장 승인사항 중 반드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핵심 사항인 ‘예산·결산 및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’을 새롭게 제3호로 신설함으로써, 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장의 감독 기능은 적절히 유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29조제2항제3호 신설
 - 예산·결산 및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

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조례 제 호

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제29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
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이사회 상정안 등 그”를 “그”로 한다.

3. 예산·결산 및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9조(감독) ① (생략)</p> <p>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. <u>이사회 상정안 등 그 밖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</u></p>	<p>제29조(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예산·결산 및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그 -----</u></p>